

# 多品目纖維協定(MFA)의 經濟的 效果와 우리의 對應

嚴 峰 成

## ▷ 目 次 ◁

- I. 序
- II. 世界의 纖維類產業
- III. MFA의 主要內容
- IV. MFA의 經濟的效果
- V. MFA의 改編論議와 우리의 對應方向

## I. 序

纖維類製品<sup>1)</sup>은 국민생활의 必需品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非熟練勞動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纖維類產業은 工業化 初期段階의 中樞產業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生產과 雇傭側面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纖維類貿易에 대한 保護貿易措置는 일찍부터 汎世

界的으로 보편화되었다. 특히 兩次大戰 사이의 기간에는 大恐慌으로 인하여 纖維類需要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日本이 新興 纖維輸出國으로 浮上하게 되자 保護措置는 더욱 增大하여 美國은 日本과 對美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들어서 GATT, OECD의 主導下에 일반적으로 貿易自由化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纖維類貿易에 있어서는 이러한 自由化에 오히려逆行하여 日本 및 開途國의 수출에 대한 規制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1950년대 중반 開途國의 纖維類輸出이 급증함에 따라 先進國은 이에 대한 대응책摸索에 腹心하게 되었으며, 이란 맥락에서 “市場攪亂”的概念이 美國에 의해 GATT에 提起되었다. 그 결과 1961년 級製品의 輸入數量 規制를 위한 「短期 級織物 協定」(Short-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STA)이 체결되었으며 이 協定은 그 다음해 「長期 級織物 協定」<sup>2)</sup>(Long-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筆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 1) 이하에서 纖維類라 함은 纖物類뿐만 아니라 衣類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2) 우리나라 1963년 12월 LTA에 加入하여 1964년부터 적용, 實시하였다.

Textiles: LTA)으로 발전하여 1973년까지 세 차례의 연장을 거쳐 12년간 실시되었다. 이러한 협정은 纖維類貿易에 대한 多者間 協定의 嘴矢로서 市場攪亂 방지를 위한 輸入國의 選別의이고 差別의인 數量規制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編製品類貿易에 대한 포괄적인 雙務協定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는 無差別 原則과 數量規制의 禁止 등을 표방한 GATT의 기본정신으로부터 離脫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60년대 들어서 「폴리에스터」등 人造纖維의 사용이 증대되고 貿易도 늘어남으로써 編製品만을 規制對象으로 한 LTA下에서는 충분한 輸入規制效果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의 주도하에 1974년 合成纖維에 대한 規制까지를 포함하는 이른바 「多品目 纖維協定」(Multi-Fibre Arrangement: MFA)이라는 「纖維類 國際貿易에 관한協定」이 체결되었다. MFA는 그후 두 차례의 연장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보통 그 순서에 따라 MFA I, MFAII, MFAIII로 불린다.

현재의 MFAIII는 1986년 7월에 滿了될 예정인바 최근 MFA의 改編論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MFA가 纖維類輸出入國 經濟에 미친 效果를 분석하고 纖維類 大量輸出國인 우리나라의 MFA 改編에 대한 對應方向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 II. 世界의 纖維類產業

### 1. 纖維類生產 및 雇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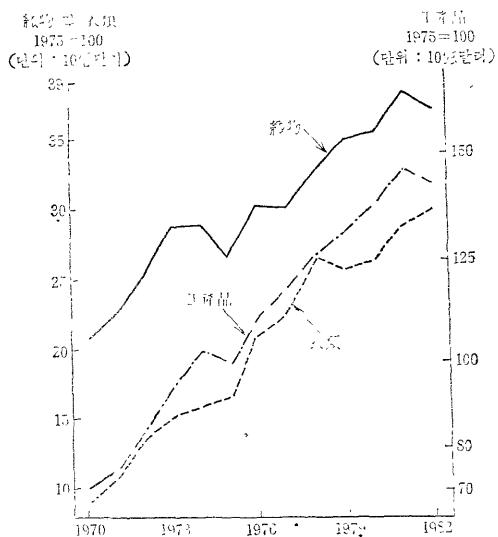
世界의 纖維類生產 및 雇傭推移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市場經濟國 전체로 볼 때 製造業 總附加價值에서 纖維類와 衣類가 차지하는 比率은 1953년도에 각각 8.4%, 5.2%였으나 그 이후 持續的으로 下落하여 1980년도에는 각각 5.6%, 3.1%를 占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纖維類 및 衣類의 附加價值比重의 하락추세는 先進國과 開途國으로 나누어서 살

〈表 1〉 製造業 總附加價值 및 總雇傭에 대한 纖物類 및 衣類의 比率

	製造業 總附加價值에 대한 比率						製造業 總雇傭에 대한 比率					
	織 物 類			衣 類			織 物 類			衣 類		
	1953	1970	1980	1953	1970	1980	1953	1970	1980	1953	1970	1980
市 場 經 濟 國	8.4	6.4	5.6	5.2	3.6	3.1	17.4	16.5	14.8	8.3	8.4	8.0
先 進 國	7.4	5.1	4.4	5.1	3.3	2.8	12.1	9.1	7.2	8.6	6.8	5.7
北 美	5.1	4.1	3.6	5.2	3.5	3.1	7.8	6.7	5.7	8.6	6.9	6.6
日 本	16.5	5.8	3.9	1.6	2.0	1.9	23.1	14.2	10.9	3.0	4.2	4.8
E C (9)	11.5	6.1	5.3	4.8	3.2	2.6	13.5	8.7	6.8	9.4	7.4	5.4
기 타 서 유 협	8.9	4.6	3.6	6.1	3.7	3.0	10.4	6.8	5.2	9.8	6.8	4.5
開 途 國	23.5	16.3	11.5	6.8	5.9	4.5	29.2	27.8	24.0	9.2	11.0	10.9
남 유 런	24.4	12.9	10.3	6.0	5.8	5.4	20.0	15.5	14.5	9.5	10.8	11.0
아 시 아	28.9	22.9	15.7	8.2	6.5	5.6	34.6	33.2	28.5	9.0	11.6	11.3
中 南 美	19.0	12.7	8.8	7.1	5.7	3.0	20.5	14.7	12.2	10.3	9.0	8.7
아 프 리 카	22.5	27.4	—	2.1	5.2	—	32.1	29.3	—	5.5	10.3	—

資料 :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1984.

〔圖 1〕 織維類의 世界輸出推移(1970~82)



資料 :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1984.

펴보아도 마찬가지인바 이는 1970년대의 世界景氣沈滯 의에도 人口增加率의 鈍化와 織維類需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先進國 需要增加의 鈍化 등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製造業 總雇傭에서 織維類產業의 雇傭이 차지하는 비중은 同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市場經濟國 전체로서 볼 때 1970년의 24.9%에서 1980년에는 22.8%로 하락하였다. 특히 織物類部門에서는 先進國과 開途國을 막론하고 雇傭比重이 현저히 하락했으며 이는 물론 織物類의 生産비중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에 더하여 勞動節約的인 織維機械의 사용이 확대된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면 衣類部門에 있어서는 先進國의 경우에 1970년의 6.8%에서 1980년에는 5.7%로 雇傭比重이 감소했으나 開途國의 경우에는 거

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織維類의 附加價值 및 雇傭比重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현재 市場經濟國 全體製造業 總附加價值의 8.7%, 總雇傭의 22.8%나 占하고 있다. 특히 開途國의 경우에는 同比率가 각각 16%, 34.9%나 되어 先進國의 경우보다 織維類가 國民經濟에서 더욱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織維類의 貿易推移

織維類의 世界交易量은 1982년 현재 總930億 달러에 달하며 이는 世界工產品輸出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織維類輸出의 年增加率은 1963~73년 기간중의 11.5%에서 1973~82년 기간중에는 4.8%로 크게 둔화되었다<sup>3)</sup>. 織維類를 織物類와 衣類로 나누어서 그 輸出推移를 〔圖 1〕에서 보면 1970~78년 기간 중 衣類輸出이 織物類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衣類輸出의 急增은 아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開途國의 衣類輸出增大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世界 織維類交易의 地域別 比重을 〈表 2〉에서 살펴보자. 先進國이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織物類 輸出比重은 1950년대 중반의 80% 수준에서 1982년에는 60% 수준으로, 衣類에서의 輸出比重은 50년대의 70% 수준에서 1982년에는 38%까지 떨어졌으며 그 반면 開途國과 東歐圈國家의 輸出比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衣類分野에 있어서 開途國의 輸出比重이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地域間의 織維類 貿易收支를 〈表 3〉에

3)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1984, p.35.

서 살펴보자. 先進國은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纖維絲의 貿易收支赤字가 黑字로 反轉되어 81년 현재 衣類分野를 제외한 全品目에서 貿易黑字를 示顯하고 있다. 그러나 3個分野의

〈表 2〉 世界織物類와 衣類輸出의 地域別 比重  
(세계=100, 단위 : %)

		1955	1963	1973	1982
織物類	先進國	79	74	70	60
	開途國	15	18	22	30
	東歐圈	6	8	8	10
衣類	先進國	71	67	51	38
	開途國	10	15	35	48
	東歐圈	19	18	14	14

資料 :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1984.

〈表 3〉 主要地域別 貿易收支  
(단위 : 10億달러)

		先進國	開途國	東歐圈國家
織物類	1963	0.73	-0.84	0.08
	1973	0.68	-0.75	0.16
	1981	3.24	-3.12	0.26
衣類	1963	-0.07	-0.04	-0.24
	1973	-4.06	3.24	0.26
	1981	-16.80	12.13	1.81
纖維絲	1963	-1.48	1.32	-0.65
	1973	-0.52	0.94	-0.72
	1981	2.64	-0.35	-1.99
纖維機械	1963	0.52	-0.47	0.02
	1973	2.25	-1.98	-0.07
	1981	2.90	-3.51	-0.29
工產品	1963	19.51	-18.69	0.49
	1973	51.75	-52.02	-4.65
	1981	193.87	-207.73	-0.95

資料 :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1984.

4) 그러나 베를織物(handloom fabrics)과 家內工業製品(cottage industry products) 및 傳統土俗手製品(traditional ethnic handicraft products) 등은 그 規制對象에서 제외되었다.

5) 예를 들면 協定參與國들은 輸入規制措置 발동시에 TSB에 보고하여야 하며 TSB는 그것이 協定條項과一致하는지를 檢討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TSB는 輸出入國間의 紛爭解決의 場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黑字額은 衣類에서의 赤字額인 168億달러의  $\frac{1}{2}$ 수준인 87億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開途國의 衣類輸出 貿易黑字는 1981년에 121億달러에 달하였으나 同製品 生產을 위한 纖維原絲 輸入이나 관稅품목인 織物, 纖維機械 등에서의 貿易赤字 70億달러를 차감하면 纖維類 貿易黑字는 51億달러에 불과하다. 그리고 開途國은 工產品 전체로 보면 만성적인 貿易赤字를 기록하고 있으며 赤字幅 역시 크게 확대되어 1981년 현재 총적자액은 2,077億달러나 되고 있다.

### III. MFA의 主要內容

#### 1. MFA I(1974~77년)

MFA는 纖維類輸入에 대한 選別的 規制를 허용함으로써 GATT의 無差別原則에 예외가 된다는 점에서 LTA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LTA보다는 規制對象品目을 대폭 확대하여 編製品은 물론 毛와 人造纖維類製品까지를 포함시켰다<sup>4)</sup>. 그리고 MFA는 輸出入國間의 衡平을 고려하여 輸出國에도 秩序있는 무역확대에 대한 기대를 주었다는 점에서는 LTA보다 약간 進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MFA는 纖維類貿易의 확대 및 積極적인 貿易自由化具現과 이를 통한 開途國 經濟·社會發展의促進을 그 기본목표로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先進國의 지속적인 產業構造調整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協定事項의 遵遂與否를 감시하기 위한 纖維監督機構(Textile Surveillance Body)<sup>5)</sup>를 설립하기도 하였던 것

이다.

MFA의 核心은 規制의 要件 및 그 方法을 明示한 協定 3條와 4條 그리고 부속서 A와 B로 集約될 수 있다. 먼저 3條에서는 市場攪亂基準에 의한 輸入制限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輸入國은 부속서 A에서 규정하고 있는 市場攪亂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關係輸出國에 協議를 要請할 수 있으며<sup>6)</sup> 이러한 市場攪亂에 근거한 輸入制限은 市場攪亂을 蒼起한 特定輸出國의 特定品目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속서 A에 의하면 市場攪亂이란 國內生產者에 대한 심각한被害의 존재 혹은 그런被害를 일으킬 實제적인 위협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市場攪亂의 要因으로서 부속서 A는 ① 特定品目的 特定供給源으로부터의 급격한 輸入의 증가나 ② 輸入國市場에서 類似商品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輸入品의 供給價格 등을 들고 있다.

MFA協定 4條는 輸入國 市場攪亂의 實제적 위협을 除去하고 纖維類貿易의 질서있는 확대

를 위하여 相互受諾할 수 있는 조건으로 雙務協定을 체결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부속서 B에는 이러한 雙務協定下에서의 「쿼터」量의 決定 및 運用에 관련되는 基準實績(base level), 增加率(growth rate), 融通性(flexibility) 등이 規定되어 있다. 즉, 協議要請 이전 2個月로부터 遷及하여 계산한 12個月間의 實際輸出實績이 基準實績이 되어 여기에다 최소한 年6%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쿼터」量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7)</sup>. 融通性이란 輸出國이 規制範圍內에서 「쿼터」量을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부속서 B의 5項은 轉用(swing), 操上(carry-forward), 移越(carry-over)에 관한 内역을 明示하고 있다<sup>8)</sup>.

그 밖에 特記할 만한 사항으로는 1條 2項의 最小生產保障(Minimum Viable Production: MVP)條項과 8條의 遷廻輸出禁止條項을 들 수 있다. 最小生產保障條項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北歐地域의 소규모 국가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一名「노르딕」條項(Nordic Clause)이라고도 한다. 이는 國內市場이 협소하고 국내생산규모도 작은 나라들의 경우 여타 수입국과 마찬가지로 一律的인 最小輸入增加率을 적용하면 그 나라의 纖維產業存立에 필요한 最小生產마저 위협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속서 B에 규정된 最小增加率보다 낮은 증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遷廻輸出禁止條項은 協定國들이 換積, 遷廻輸送 또는 MFA非參加國들의 不法行爲에 의한 MFA約定의 遷廻的 違反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違反行爲를 막기 위한 行政의 指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 60日 以內에 合意를 이루지 못하면 부속서 B에 규정된 수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1년간一方의 輸入制限이 가능하다.

7) 그러나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關係輸出國과의 協議後 6%보다 낮은 증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① 6%의 증가율을 適用時 市場攪亂 사태가 再發할 근거가 명백할 때

② 規制措置가 앞으로 一定期間 더 有效하게 될 경우 上記(증가율)의 적용으로 市場攪亂 사태가 악화될 징후가 있을 때

③ 輸入國의 市場規模가 적고 國內生產規模가 낮을 경우 上記 증가율이 적용되면 이러한 국가들의 企業存立에 필요한 最小生產이 위협을 받는 예의적인 경우.

8) 轉用이란 「쿼터」總量의 限度內에서 각品目別 「쿼터」量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통 年5~7%가 허용된다. 操上은 다음期의 「쿼터」量을 本期 수출에 일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移越이란 本期의 未使用 「쿼터」를 다음해로 移越시켜 사용하는 것으로서 移越과 操上을 합하여 年 10%를 넘을 수 없다고 規定되어 있다.

이상 살펴본 MFA 下의 貿易體制는 MFA 2 條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MFA 이전의 각종 規制措置의 深遠적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過度期的 體制였다고 할 수 있다. MFA I 施行의 初期에는 同協定의 모호함 때문에 協定國 사이의 雙務會談은 자주 결렬되었으며 이에 따라 3條에 의한一方的인 規制措置에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나 차차로 協定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감에 따라 雙務的인 解決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MFA는 綿 외에 毛와 人造纖維로 規制對象을 확대시킴으로써 規制의 強度 또한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MFA가 체결되기 훨씬 이전부터 GATT體制 밖에서 存續되어 왔던 毛製品類에 대한 각종 規制措置들과 비교해 볼 때 MFA는 오히려 그러한 既存의 規制들을 統合하여 規制의 틀을 정립하고 약간은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MFA I 기간동안에는 輸入國들이 「쿼터」의 基準實績, 年增加率 및 融通性에 대한 MFA의 기준과 의무를 대체적으로 존중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 2. MFA II(1978~81년)

MFA I 은 世界經濟의 지속적인 成長을 배경으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MFA I 的 滿了에 즈음한 1975년도의 급격한 世界景氣沈滯는 MFA의 延長協商過程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美國을 포함한 대부분의 協定參加國들은 MFA를 單純延長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EC國들에 있어서는 1974~77년 MFA I 기간 중에 纖維產業의 需要沈滯와 生產性 向上의複合作用으로 심각한 失業問題가 대두되었으며 纖維製品의 輸入도 크게 증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EC國들은一方的「쿼터」의 적용과 MFA로부터의 탈퇴 등으로 輸出開途國側을 위협하여 合理的 離脫條項 등을 新設·追加하여 MFA를 延長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結果 MFA II는 累積的 市場攪亂(cumulative market disruption)概念의 도입과 合理的 離脫(reasonable departure)條項의 新設로 MFA I 보다도 훨씬 더 規制的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累積的 市場攪亂이란 기본적으로 輸入國의 市場攪亂이 모든 輸出國들의 累積된 總輸出에 의해 초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輸入國은 市場攪亂을 방지하기 위해서 總輸入에 대한 上限(global ceiling)을 설정하고 總輸入이 이 上限을 초과할 때엔 그러한 限界輸出을 한 關係輸出國의 「쿼터」量에 관계없이 當該輸出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合理的 離脫이라 함은 當事國들의 合意만 있다면 MFA條項에서 얼마든지 離脫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基準實績, 增加率, 融通性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sup>9)</sup>.

MFA I 과 비교해 볼 때 MFA II下에서는 대부분의 輸入國들이 規制措置를 擴散하거나 強化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規制의 대상은 輸入先進國側이 1970년대에 輸出開途國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競爭的 壓力を 받아왔던 衣類製品 쪽으로 옮아갔다.

雙務協定은 이 기간에도 貿易規制의 主要한 手段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輸入國側은 合理的 離脫條項을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輸入規制 目的을 달성하였다. 合理的 離脫條項의

9) MFA가 GATT體制로부터의 離脫이라면 MFA II의 合理的 離脫條項은 MFA로부터의 離脫이므로 '離脫로부터의 離脫'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적용은 MFA上에 規定된 輸出入國間의 權利와 義務 사이의 均衡을 깨뜨린 것이었으나 輸出開途國側은 그래도 雙務協定이 一方的 規制보다는 덜 不利하다는 판단에서 그러한 措置를 수락하였던 것이다.

### 3. MFA III(1982~86년)

1970년대 말에는 先進國들에 있어서도 高인 플레, 경제성장의 低下 및 失業增大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加重되었다. 따라서 規制를 더욱 강화하려는 輸入先進國의 입장과 MFA의

철저 내지는 MFA I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輸出開途國의 입장은 MFA의 延長協商過程에서 팽팽히 對立하게 되었다.

1981년 12월 제네바에서 MFA는 1982년 1월부터 1986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다시 延長 실시될 것이 결정되었는데 MFA III는 合理的 離脫條項의 削除 및 輸入急增防止(anti-surge)條項의 新設로 특징지워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MFA III는 MFA II下에서의 合理的 離脫條項을 없애는 대신 각 해당사항별로 合理的 離脫을 구체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基準實績의 경우,

〈表 4〉 LTA와 MFA의 主要內容 比較

	LTA	MFA I	MFA II	MFA III
規制期間	1962. 2~73. 12	1974. 1~77. 12	1978. 1~81. 12	1982. 1~86. 7
規制對象	綿 織 物	綿, 毛 및 人造纖維	左 同	左 同
年增加率	5% 以上	6% 以上	合理的 離脫條項의 삽입으로 시장교란 발생시 6% 以下 적 용 가능	雙務協定에 근거하여 상호합의 하 에 하향조정 가능
融通性	規定 없음	操上+移越=10% (단, 操上은 5%以下) 轉用은 7%以上	左 同 그러나 合理的 離脫 條項의 적용으로 轉 用은 5%까지 하향 조정 가능	상호합의 하에 하향조정 가능
最小生產 保障	規定 없음	北歐 3國에 대하여 막연히 규정	左 同	同條項 明文化(연장의 정서 11항)
輸入基準 實績의 削減	規定 없음	左 同	실제적으로 合理的 離脫條項에 의거 적용	同規定 明文化(9항) 年增加率 조 항과同一
輸入急增 防 止	規定 없음	左 同	左 同	「쿼터」量과 實輸出物量의 차이로 인한 市場攪亂의 경우, EC는 輸 入增加率이 10%이상인 敏感品目 이며 시장점유율 1% 이상이거나 「쿼터」消盡實績 50%이상인 품목 에 대하여 융통성 조항적용 유보, 輸入上限物量의 설정이 가능
少量輸出國 優 待	規定 없음	개도국 우대조항으 로 기준이 모호하게 規定되어 있음	연장의 정서 5항에 에매하게 규정	小規模 輸出國 특별우대 고려 원 칙 明示(연장의 정서 12항)

특별히 基準實績이 크거나 현저하게 많은 輸出을 하는 나라의 경우(여기서는 한국, 홍콩을 지칭)에는 兩當事國의 協議를 통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基準實績이削減(cut-back)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쿼터」增加率 및 融通性 적용에 있어서도 當事國의 合意만 있다면 부속서 B에 規定된 수준보다 낮은 증가율의 적용과 融通性의調整을 가능토록 하였던 것이다. 輸入急增防止(anti-surge)條項은 主要輸出國의 市場浸透를 막기 위해 EC國들이 MFA에 새로 도입한 조항이다. 즉,相互協議된 「쿼터」 내에서라도 갑작스러운 輸入增加로 초래되는 輸入國市場의被害를 막기 위한 緊急輸入制限措置를 규정한 것이다<sup>10)</sup>.

MFA III는 規制의 強度에 있어서 MFA II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輸入急增防止條項의 新設 등은 大量輸出國에게는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 설명한 LTA, MFA I, MFA II, MFA III의 주요내용을 요약·비교해 보면 <表 4>와 같다.

## V. MFA의 經濟的 效果

MFA의 經濟的 效果를 分析함에 있어서는 먼저 輸入規制論者の 주장대로 MFA가 과연 織維類 輸入을 減少시킴으로써 輸入國의 雇傭을 증대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나를 評價해 본 다음 MFA로 인한 織維類 價格上昇 및 產業構造 歪曲效果, 貿易轉換(trade diversion)效果 등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輸入量 및 雇傭에 대한 效果

MFA에 의해서 織維類輸入을 규제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輸入이 증대됨으로써 輸入國의 織維類 生產이萎縮되고 勞動集約의 織維類 產業에 있어서 雇傭이 크게 減少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織維類 產業은 주로 非熟練 労動者 특히 女性勞動者를 많이 雇傭하고 있으므로 織維類 產業에서 放出된 労動者는 다른 부문으로 흡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織維類 產業에서의 雇傭減少는 곧 全體雇傭의 減少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織維類製品의 主要輸入國인 美國과 EC의 70년대 이후 織維類 輸入狀況을 살펴보면 각각 <表 5>, <表 6>과 같다.

美國은 MFA가 체결되기 이전인 1970년대初盤부터 각종 雙務協定을 통해 織維類輸入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그 결과 1971~81년 기간동안 織維類 總輸入量은 年平均 0.3% 정도 씩 오히려 減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總輸入量이 減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 輸入急增防止條項의 發動要件으로는 輸入의 急激하고도 實質的인 증가에 의해 輸入國에 實質的인 困難이 起起될 수 있고, 그 困難이 未消盡「쿼터」에서 발생하며, 또한 國內產業에 심각하고도 명백한被害를 주거나 출 위협이 있을 경우를 들고 있다. 이때 兩當事國은 相互 滿足할 만한 解決책에 合意할 수 있으며 輸入國은 輸出國에 추가적 규제에 대한 적절한 補償을 提供하여야 한다.

고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은 持續的으로 증대되었는데 開途國中에서도 大量輸出國인 韓國, 台灣, 홍콩으로부터의 輸入은 同期間中 年平均 3.4% 정도씩 증가한 반면 여타 開途國은 10%의 높은 增加率을 보였다. 한편 纖維類總輸入 중에서 纖物類와 衣類의 비중을 살펴보면 纖物類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衣類의 비중은 계속 상승하여 1981년에는 54%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EC에 있어서 低價供給國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한 규제는 美國과는 달리 1976년에 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低價供給

國으로부터의 纖維類輸入 증가율은 1973~76년 기간의 年平均 24.1%에서 1976~81년 기간에는 1.5%로 격감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同期間中 雙務協定에 의해 규제를 받는 나라들로부터의 輸入增加率은 0.9%에 불과하였으나 EC에 의해 特惠國으로 인정되는 나라들로부터의 輸入은 9.1%, 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은 3.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sup>11)</sup>.

이상의 分析을 통해서 볼 때 美國이나 EC와 같은 主要纖維輸入國들은 MFA를 체결함으로써 纖維類輸入을 규제하는 데 성공하여 纖維類輸入 증가율이 MFA에서 保障된 年最小增加率 6%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表 5> 美國의 纖維類 輸入(1971~81)

(단위 : 100萬SY 상당)

	衣類	纖物類	合計	輸入源						
				홍콩·台 湾·韓國	拉 美 리 카	日 本	中 共 국	유럽 및 타		
1971	2,098	3,853	5,951	1,762	293	383	1,691	0.2	1,822	
1972	2,226	4,010	6,236	1,810	369	559	1,249	11	2,238	
1973	2,090	3,035	5,125	1,523	453	635	813	33	1,668	
1974	1,937	2,473	4,410	1,475	422	571	861	84	998	
1975	2,077	1,751	3,828	1,599	362	432	536	141	758	
1976	2,428	2,560	4,987	2,040	457	696	747	153	894	
1977	2,466	2,511	4,977	1,978	418	552	943	91	995	
1978	2,905	2,834	5,739	2,247	605	776	853	201	1,058	
1979	2,671	1,968	4,639	1,927	516	812	492	231	670	
1980	2,884	2,000	4,884	2,210	461	820	461	325	608	
1981	3,136	2,626	5,762	2,460	543	993	503	562	702	
年增加率										
1971~81	4.1	-3.8	-0.3	3.4	6.4	10.0	-11.4	100+	-9.1	
1971~76	3.0	-7.9	-3.5	3.0	9.3	12.7	-15.1	100+	-13.3	
1976~81	5.3	0.5	2.9	3.8	3.5	7.4	-7.6	29.7	-4.7	
比重										
1971	35.2	64.8	100.0	29.6	4.9	6.4	28.4	—	30.6	
1976	48.7	51.3	100.0	40.9	9.2	14.0	15.0	3.1	17.9	
1981	54.4	45.6	100.0	42.7	9.4	17.2	8.7	9.8	12.2	

資料 : *Costs of Protecting Jobs in Textiles and Clothing*,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1984., p. 84~85.

11) 이는 아래에서 說明한 貿易轉換效果 때문이다.

있다<sup>12)</sup>.

다음으로 纖維類輸入과 輸入國의 雇傭과의 關係를 살펴보기로 하자. 1973~79년 기간에 EC의 纖物類와 衣類生產은 각각 4%와 1% 減少한 반면 雇傭은 각각 23%와 21% 減少하였다<sup>13)</sup>. 이 統計는 同期間中에 勞動者 1人當 生產性이 약 25% 정도 상승하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每日 輸入이 전혀 증가하지 않아서 EC의 纖維類 生產水準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生產性增加로 인하여 약 20%나

되는 雇傭減少가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sup>14)</sup>.

이로 미루어 볼 때 輸入先進國의 纖維類產業에서의 雇傭減少는 纖維類輸入增加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生產性增加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sup>15)</sup>. 더구나 纖維類產業에서 輸入增加로 인하여 약간의 雇傭減少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다 總失業의 증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纖維類產業에서 방출된 勞動力은 다른 產業部門으로 흡수되게 마련인 것이다. 물론 賃金이 硬直의

〈表 6〉 EC의 纖維類 輸入(1973~81)

(단위 : 1,000톤)

先進國	低費用國家			合計
	雙務協定國	特惠國	合計	
1973	254	n.a.	n.a.	826
1974	334	n.a.	n.a.	1,086
1975	306	n.a.	n.a.	1,161
1976	356	651	n.a.	1,449
1977	332	598	301	1,333
1978	354	598	366	1,426
1979	472	697	421	1,697
1980	526	709	396	1,753
1981	436	687	324	1,509
增加率				
1973~81	6.8	n.a.	n.a.	8.7
1973~76	11.9	n.a.	n.a.	20.6
1976~81	3.9	0.9	9.6 <sup>e</sup>	2.1
比重				
1973	30.8	n.a.	n.a.	100.0
1976	24.6	44.9	n.a.	100.0
1981	26.8	42.3	27.0	100.0

註 : MFA의 規制를 받는 纖維類만 포함.

資料 : *Costs of Protecting Jobs in Textiles and Clothing*,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1984, p.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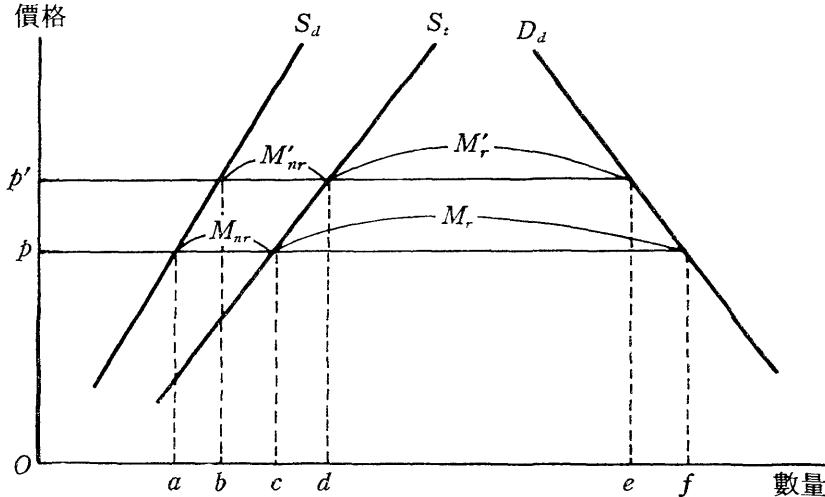
12) 이에 대해서 輸入先進國側에서는 輸出開途國側의 製品高級化 노력 등으로 인한 輸出價格의 상승이 輸出物量增加率의 鐘化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3) *MFA Forever: Future of the Arrangement for Trade in Textiles*,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International Issues No.5, p. 13.

14) 여기서 需要增加는 考慮하지 않았다.

15) 간혹 그와 같은 生產性增加가 輸入增加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輸入量과 生產性 사이의 因果關係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圖 2] 輸出自律規制의 經濟的 效果



$S_d$  : 輸入國內 供給

$S_t$  : 輸入國內 供給 + 非規制輸出國으로 부터의 輸入

$D_d$  : 輸入國內 需要

$p$  : 輸入規制前 價格

$p'$  : 輸入規制後 價格

$M_{nr}$  : 非規制輸出國으로 부터의 輸入

$M_r$  : 規制輸出國으로 부터의 輸入

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調整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기는 하나 長期的으로 보면 그러한 產業部門間 労動의 재조정은 원활한 產業構造調整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經濟成長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輸入規制論者들의 가장 큰 구실이 되고 있는 輸入國의 失業增大問題는 근본적으로 輸入增大로 초래된 것이라기보다는 輸入國의 硬直的인 產業構造로 인하여 새로운 雇傭機會를 많이 창출해 내지 못하는 데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2. 纖維類의 價格上昇效果 및 貿易轉換效果

MFA下에서의 雙務協定을 통한 纖維類의 輸入數量規制는 「취티」 관리를 輸出國에서 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넓은 의미의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래에선 먼저 이와 같은 輸出自律規制의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 각效果를 實證的 예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다시 분석해 보기로 하자.

[圖 2]는 輸入國의 市場狀況을 나타내고 있는데  $S_d$ 와  $D_d$ 는 각각 輸入國의 國內供給과 需要를 가리키며,  $S_t$ 는 輸入國의 國內供給( $S_d$ )에 非規制輸出國<sup>16)</sup>으로부터의 輸入을 합한 供給曲

16) 輸出國은, 規制下에서 輸出하는 規制輸出國과 規制를 받지 않는 非規制輸出國으로 나누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線이다. 현재 纖維製品의 價格水準  $P$ 에서 輸入國의 國內生產量은  $oa$ 이며  $af$ 만큼 輸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總輸入量  $af$ 는 非規制輸出國으로부터의 輸入  $ac$ 와 規制輸出國으로부터의 輸入  $cf$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輸入國이  $af$ 인 總輸入量을  $be$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輸出自律規制를 통해 輸入數量을 規制하기 시작했다고 하자. 그러면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價格은  $p$ 에서  $p'$ 로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輸入國內 生產은  $ab$ 만큼 증대되며 總輸入量은  $af$ 에서  $be$ 로 줄어든다. 總輸入量 변화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規制輸出國으로부터의 輸入은  $cf$ 에서  $de$ 로 감소한 반면 非規制輸出國으로부터의 輸入은  $ac$ 에서  $bd$ 로 오히려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즉 輸入國市場에서 非規制輸出國이 規制輸出國의 市場占有率을 잡식하는 貿易轉換效果가 발생하는 것이다.

### 가. 價格上昇效果

MFA와 같은 輸入數量 규제조치는前述한 바와 같이 輸入國內의 纖維類製品價格을 世界市場價格보다 높게 하여 輸入國 消費者의 부담을加重시키며 그 差額은 일종의 經濟的 地代(economic rent)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MFA에서와 같이 輸出國이 「쿼터」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下에서는 그 經濟的 地代가 전부 輸出國의 生산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17) Glenn P. Jenkins, "Costs and Consequences of the New Protectionism," 1980. 7.

18) 영국의 경우 MFA 체결 이후 纖維類 平均輸入價는 15~40% 정도 상승하였고(British Consumer Association) 캐나다에선 1976~79년 사이에 規制國으로부터의 輸入衣類都賣價格이 87%나 상승함으로써 非規制國으로부터의 수입의류가격 상승률 67%, 국내생산의류의 가격상승률 40%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이와 같이 MFA의 數量規制措置가 價格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업자들 사이에 있어서 「쿼터」의 讓渡에 부과되는 「쿼터」價格(quota premium)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출업자가 「쿼터」를 양도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쿼터」價格은 일반적으로 선진국 수입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그 제품의 實體생산비와의 차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輸入規制措置로 인한 價格上昇幅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詹킨스」(1980)<sup>17)</sup>는 그의 연구에서 캐나다로 輸入되는 衣 옷(outerwear)의 輸入價格을 原價와 「쿼터」價格 및 관세 등으로 분류하여 分析하였다. <表 7>에서와 같이 「쿼터」價格을 輸入國到着價格(net landed cost)과 비교하여 보면 台灣, 韓國, 홍콩의 경우에 각각 29%, 29%, 16%를 차지하고 있어 輸入數量規制가 심각한 價格上昇效果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8)</sup>.

또한 輸入數量規制는 주로 開途輸出國이 많이 輸出하는 低價製品에 적용되므로 그러한 低價輸入纖維類를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支出 부담을 줌으로써所得分配를 惡化시키는 effect도 줄 수 있다고 「詹킨스」

<表 7> 台灣, 韓國, 홍콩으로부터 輸入되는  
겉옷의 價格構成(1979)

(단위 : 캐나다\$)

	台 灣	韓 國	홍 콩
F O B 가 격	4.41	6.35	8.60
「쿼터」가 격(B)	1.57	2.15	1.52
관 세	1.86	2.44	3.16
운임 및 보험료	.66	.66	.66
수입국도착가격(A)	5.37	7.44	9.77
B/A (%)	29	29	16

資料 : Costs and Consequences of the New Protectionism, Glenn P. Jenkins, 1980. 7.

(1980)는 지적하고 있다<sup>19)</sup>.

뿐만 아니라 輸入數量規制에 의한 價格上昇은 輸入國內의 경쟁력이 없는 생산자도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고 輸出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品이 高級化되고 高價化됨으로써 원래 高級纖維類를 생산하고 있던 수입국내 생산자와의 경쟁을 격화시켜 선진국 생산자가 오히려 低級品의 생산에 치중하게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이 產業構造調整을 마무리지을 때까지의 잠정적 규제를 목표로 하는 MFA가 纖維類의 價格을 왜곡시킴으로써 오히려 产业構造調整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纖維類 輸出入國間의 무역마찰을 더욱深化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貿易轉換(trade diversion) 效果

MFA에 의한 纖維類 輸入規制는 開途輸出國에게만 적용되고 先進輸出國 및 여타 特惠輸出國에는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써 [圖 2]에서 본 바와 같이 開途輸出國의 輸入市場占有率为 그러한 規制輸出國에 의해蚕食당하는 貿易轉換現象을 초래한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중 EC의 纖

〈表 8〉 EC의 纖維類 輸入增加率(1976~1979)  
(年平均增加率)

	MFA 대상 품목	그룹 I 제품	그룹 II 제품	그룹 III 제품	그룹 IV 제품	그룹 V 제품
E C域外國	5.7	2.4	3.8	16.8	0.0	12.4
쌍무협정체결국	2.4	0.8	1.9	14.1	0.4	4.2
저개발국	4.0	1.9	5.5	15.3	0.7	2.5
동유럽국	0.3	0.0	9.4	4.6	0.7	4.3
지중해연안국	7.9	4.6	8.1	21.2	4.9	38.0
Lomé 협정국	8.8	4.7	95.2	33.3	16.7	—

資料: 'Back Up' Study on Textiles, 섬유수출개도국단, 1984.

19) Glenn P. Jenkins, 前揭論文, pp. 42~44.

維類 輸入增加率을 〈表 8〉에서 보면 雙務協定체결국들로부터의 輸入增加率은 2.4%로서 地中海 沿岸國의 7.9%와 Lomé協定國의 8.8%보다 훨씬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貿易轉換效果는 수입국측이 당초 의도했던 纖維類 總輸入의 規制를 실현하기 어렵게 했을뿐만 아니라 纖維類 製品生產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開途輸出國의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 3. 綜合評價

이상 설명한 MFA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해 보면 MFA에 의한 纖維類의 規制는 輸入增加를 크게 鈍化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保護貿易主義者들의 당초 주장과는 달리 輸入國 纖維產業에서의 雇傭減少를 막는 데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先進輸入國에서의 雇傭減少가 輸入增大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기보다는 生產性의 급격한 증가, 勞動市場과 產業構造의硬直性 등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MFA에서의 輸入規制는 다음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첫째, 輸入國內의 纖維類製品價格을 상승시킴으로써 輸入國消費者의 부담을加重시켰다. 특히 이와 같은 가격상승 효과는 低價製品에서 현저하여 低所得層의 支出負擔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함으로써所得配分을 惡化시키는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이 歪曲된 纖維類의 價格構造는 輸入國의 纖維產業構造 조

정을 지연시킴으로써 纖維類의 무역 마찰을 深化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였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MFA는 효율적 생산자인 開途輸出國에만 規制를 가함으로써 비교적 비효율적 생산자인 선진수출국 및 기타 특혜수출국의 수출을 상대적으로 늘림으로써 이른바 貿易轉換效果를 발생시켰다. 그 결과 수입국의 纖維產業 보호목적도 달성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開途輸出國의 輸出을 둔화시킴으로써 그들의 對先進國 輸入需要를 감소시켜 세계무역의 축소균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MFA는 원래 世界纖維類貿易의 점진적 자유화를 대전제로 하고 完全自由化가 이루어질 때까지 纖維類貿易의 질서확립 및 輸入先進國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잠정적인 輸入規制措置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MFA下에서의 輸入規制가 초래하는 이상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적 효과로 인하여 MFA는 오히려 纖維類貿易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 V. MFA의 改編論議와 우리의 對應方向

이 章에선 최근의 MFA改編論議를 約・설명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向을 論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의 纖維類 輸出推移를 간략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 1. 우리나라의 纖維類 輸出推移

纖維類產業은 勞動集約的 產業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主宗輸出產業이었을 뿐만 아니라 雇傭面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纖維類產業은 1983년 현재 製造業 總附加價值와 雇傭의 15%와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總輸出에서의 비중은 70년대를 통하여 크게 감소하긴 했으나 최근에도 25%나 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莫重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纖維類의 輸出推移를 〈表 9〉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MFA 成立 이전인 1960년에서 1972년 사이에 總輸出은 年平均 42%씩 증가된 데 반하여 纖維類 輸出增加率은

〈表 9〉 纖維類 輸出額 및 輸出物量 推移

	1960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60 ~72	1973 ~77	1978 ~83
總 輸 出 額(億\$)	0.3	1.8	10.0	54.3	175.0	209.9	216.2	242.2	•	•	•
增 加 率(%)	65.7	51.6	42.8	15.2	16.2	19.9	3.0	12.0	41.9	40.7	16.0
纖 維 類 輸 出 額(億\$)	0.04	0.52	3.9	18.7	50.1	61.9	59.3	60.5	•	•	•
增 加 率(%)	57.8	61.0	44.4	28.1	11.3	23.6	-4.4	2.2	56.8	35.7	12.8
總輸出中比重(%)	13.3	28.9	34.0	34.4	28.6	29.5	27.4	25.0	•	•	•
纖 維 類 輸 出 物 量(千t)			97	339	667	754	707	798	•	•	•
增 加 率(%)			26.0	32.4	22.8	13.0	-6.4	15.9	35.6	16.8	9.2

資料 : 『纖維年鑑』, 『化纖便鑑』 각호.

57%로서 纖維輸出增加率이 總輸出增加率을 上回하였다. 그러나 MFA I 체결후인 1973년에서 MFA II 체결 전인 1977년까지의 總輸出增加率은 41%, 纖維類輸出增加率은 36%로서 纖維類輸出增加率이 總輸出增加率보다 낮아졌으며 MFA II와 III에 걸친 1978년에서 1983년까지의 總輸出增加率은 16%, 纖維類輸出增加率은 13%로서 증가율이 더욱 떨어졌던 것이다. 특히 80년대 이후로는 纖維類輸出增加率이 혼자하게 鈍化되어 82년에는 負의 증가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sup>20)</sup>. 이러한 纖維類輸出增加率의 급격한 하락은 말할나위도 없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크게 강화된 先進輸入國의 輸入制規 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 纖維類輸出의 구조적 특징인 동시에 커다란 問題點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美國, 日本 및 EC國들에 偏重된 輸出構造이다. <表 10>을 보면 1983년중 美國, 日本 및 EC國에 輸出한 纖維類輸出이 전체 纖維類輸出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국에 偏重된 수출구조는 일반적으로 輸入規制를 유발하기가 쉽고 그 특정국의 경기변동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하여 큰 파급효과를 가짐으로써 장기지속적인 수출신장을沮害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主要輸出市場인 美國, EC 등이 강력한 纖維類輸入規制를 시행하고 있으므로<sup>21)</sup> 더욱 큰 어려움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纖維類種類別 輸出推移를 살펴보면 <表 11>과 같다. 輸出比重이 가장 높은 衣類는 60년대 이후 그 비중이 크게 상승하여 1982년 현재 纖維類輸出의 42% 정도를 차지

<表 10> 主要國에 대한 纖維類輸出實績推移

(단위: 百萬달러)

	1972~75	1976~79	1980	1981	1982	1983
美 國	205.0	827.7	1,113.5	1,468.2	1,619.0	1,981.1
A(%)	—	—	13.6	31.9	10.3	22.4
B(%)	15.4	23.0	—	—	28.1	33.9
日 本	431.5	814.6	885.0	1,018.5	974.0	722.0
A(%)	—	—	—	15.1	-4.3	-25.9
B(%)	32.4	22.6	17.7	16.5	16.5	11.9
E C	144.5	616.2	1,048.3	1,146.9	1,045.6	949.8
A(%)	—	—	17.1	9.4	-8.8	-9.2
B(%)	10.9	17.1	20.9	18.5	18.2	16.3
纖維類總輸出	1,331.0	3,600.2	5,010.0	6,190.0	5,920.0	6,050.0
A	—	170.5	9.3	22.1	-4.5	1.4

註 : A : 前年同期對比增減率

B : 總纖維輸出中 比重

資料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化纖便覽』.

20) 同期間中 纖維類輸出物量面에서의 年平均增加率은 각각 36%, 16.8%, 9.2%로서 지속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금액면에서의 증가율에 비하여 한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1) 우리나라 纖維類輸出에 있어서 규제하의 輸出比率은 평균적으로 50%를 약간 초과하고 있으나 미국과 EC에 대한 纖維類輸出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80% 이상이나 되고 있다.

〈表 11〉 纖維類 種類別 輸出比重

(단위 : %)

	1965	1971	1976	1980	1981	1982
綿 紡 織	22.4	10.7	6.1	8.2	5.8	6.2
化 織	11.6	8.9	12.4	22.6	22.8	21.6
衣 類 <sup>1)</sup>	32.0	37.4	37.5	35.3	37.6	41.5
其 他 <sup>2)</sup>	34.0	43.0	44.0	33.9	33.8	30.7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編織製品 除外

2) 編織物 包含

資料: 關稅廳

하고 있다. 한편, 綿織物의 輸出比重은 70년 대 중반 이후 6% 수준에 정체하고 있는 반면 化學纖維의 輸出比重은 60년대의 10%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上昇하여 1982년 현재 22%를 차지하고 있다.

## 2. MFA 的 改編論議

1986년 7월에 滿了될 MFA III 이후의 纖維類 貿易體制에 관해서는 GATT를 위시하여 輸出開途國, 輸入先進國들이 이미 각종 보고서나 국제회의 등을 통해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해 왔다. MFA의 改編方向에 관해서는 주로 輸出開途國과 輸入先進國의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지만 輸出開途國 진영내에서도 대량 수출국과 소량수출국의 입장이 다르고 수입 선진국측에서도 수입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수입국내에서도 纖維類 生產業者냐 輸入業者냐에 따라서 주장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주장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GATT事務局은 1982년 GATT각료

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서 1984년 여름에 MFA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sup>22)</sup>를 발간하였다. 그 보고서에서 GATT事務局은 MFA가 세계의 纖維類貿易과 輸出開途國 및 輸入先進國의 경제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고 MFA의 철폐가 가져올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MFA문제는 전반적인 세계의 무역정책 내지는 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MFA를 철폐하고 GATT체제로 복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잠정적 纖維類 貿易體制를 설정하는 데 각국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輸出開途國들은 1984년 7월의 「카라치」會議 등 일련의 纖維類 輸出開途國會議를 통해서 MFA를 철폐하고 GATT의 기본원칙을 遵守한다는 전제 하에 GATT體制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MFA自體가 GATT體制로부터의 離脫일 뿐만 아니라 輸入先進國側이 실제 MFA의 운영과정에서 MFA規定 조차도 위반하여 規制를 강화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輸出開途國들은 無差別原則과 數量制限의 禁止, 그리고 開途國에 대한 優待措置 등을 규정하고 있는 GATT

22)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GATT, May 1984.

體制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입선진국측에서는 美國, EC 등과 같은 主要 輸入國들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대체적으로 GATT體制로의 복귀를忌避하며, MFA를 修正延長하든지 MFA와 유사한 纖維類 무역제한체제를新設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輸入先進國側이 이와 같이 GATT體制로의 복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先進國 纖維類產業의 낮은 경쟁력에 비추어 GATT體制下에서 輸入纖維類와 자유경쟁해 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GATT 19條 긴급수입제한에 의한 輸入規制는 MFA에의 한 輸入規制에 비해 規制發動節次도 훨씬 복잡함은 물론 모든 수출국에 대해 無差別의 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被規制國들로부터 報復措置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MFA의 改編論議는 크게 두 가지 案으로 나눌 수 있겠다<sup>23)</sup>. 즉, MFA를 철폐하고 GATT의 자유무역체제로 복귀하

자는 것과 MFA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修正延長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案을 纖維類貿易에 대한 規制形態面에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案에 따르면 GATT 19條 긴급수입제한에 의해서 輸入規制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案에 의하면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수출입국간의 延長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존 MFA規定이 대체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두 가지 案에 따르는 纖維類貿易에 대한 규제내용은 GATT 19條 긴급수입제한과 MFA規定의 해당조항으로서 <表 12>에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3. 우리의 對應方向

MFA下에서는 과거의 수출실적에 準하여 「쿼터」를 배분함으로써 MFA가 존속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大量輸出國은 少量輸出國이나 新參輸出國들에 비해서 「쿼터」배분상 既得權을 누릴 수 있다는 利點이 있을 수 있다. 그

<表 12> MFA와 GATT 19條(緊急輸入制限)의 比較

	M F A	G A T T 19條
1) 規制發動의 條件	市場교란(Market Disruption)	深刻한 被害(Serious Injury)
2) 基準實積	規制導入 2個月前부터 1年間 輸入實績	缺음(단, 總量「쿼터」範圍內에서 輸入實績을 根據로 國別 Share配定可能)
3) 年增加率	6%	없음
4) 規制期間	• 3條적용時 1年延長 및 更新可能 • 4條적용時 없음	없음(被害防止 및 치유에 必要한期間)
5) 規制方式	雙務쿼터(輸出國 쿼터管理)	總量쿼터(輸入國 쿼터管理)
6) 規制對象國	纖維輸出開途國	모든 輸出國

23) GATT事務局의 前揭報告書에 의하면 이 두 가지 案 외에도 GATT條項의 완전적용은 물론 GATT條項 자체의 자유화까지 포함하는 세번째 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여기선 그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다.

려나 이러한 既得權도 최근 들어서는 輸入急增防止, 少量輸出國 優待 등 여러가지 이유에서 크게 잠식당해 왔으며 앞으로 MFA가 다시 修正延長된다면 더욱더 잠식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長期的으로 볼 때, MFA에서 처럼 人爲的으로 결정된 「쿼터」規制內에서 수출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不利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纖維類製品中에서 현재로선 우리의 경쟁력이 약하지만 앞으로 경쟁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品目들의 輸出伸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纖維產業內에서는 물론 纖維產業과 餘他產業파의 產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킴으로써 순조로운 무역확대와 경제성장을 沮害하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만약 MFA와 같은 GATT原則에 違背되는 국제무역협정이 MFA를 先例로 하여 他產業部門의 交易에까지 확산된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의 幼稚產業育成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무역규범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로 미루어 보아 MFA는 원칙적으로 撤廢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까지 MFA 改編論議의 진전상황을 볼 때 현 단계에서 MFA가 撤廢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막상 撤廢된다고 하더라도 輸入先進國 등이一方的 輸入規制 및 VER, OMA등 灰色規制措置들을 남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GATT原則으로의 복귀는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MFA를 撤廢하고 GATT體制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또한 이를 支持해야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自由貿易體制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MFAⅢ가 自由貿易體制로의 전환을 위한 잠정적 체제로서 좀더 GATT原則에 부합되는 협정으로修正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MFA 改編協商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原則이 강력히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MFA의 修正延長은 궁극적으로 完全撤廢를 위한 잠정조치에 불과하므로 MFA撤廢의 時期를 明文化하여야 하며 원래의 MFA 이후 두 차례의 延長過程에서 新設된 모든 毒素條項을 철폐해야 한다.

둘째, MFA를 좀더 GATT原則에 부합되도록 修正해야 한다. 예를 들면 選別的 規制의 근거가 되는 市場攬亂 概念을 再整立하고, 規制對象品目을 축소하며 融通性 條項을 擴大하는 것 등이다.

세째, 이러한 MFA規定에서 또다시 離脫이 발생하지 않도록 輸入先進國의 MFA 준수여부와 產業構造調整 여부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MFA의 撤廢時 적용될 GATT原則,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와 VER, OMA등과 같은 灰色地帶措置들을 좀더 自由貿易을 助長하는 방향으로 再整備해야 한다는 것이다.

## ▷ 參 考 文 獻 ▷

- 朴俊性,『世界纖維產業と 先進國 輸入規制』,  
國際經濟研究院, 1981. 7.
- 商工部,『多者間 纖維協定(MFA) 解説書』, 19  
84. 7.
- 韓國產業銀行,『纖維産業의 構造分析과 國際競  
争力 強化方案』, 1984. 12.
- 韓國纖維産業聯合會,『纖維年鑑』, 1977~83.  
\_\_\_\_\_,『纖維工業現況』1982, 1983.
- Curzon, Gerard and Jose de la Torre, Juergen  
B. Donges, Alasdair I. MacBean, Jean  
Waelbroeck, Martin Wolf, *MFA Fore-  
ver? Future of the Arrangement for  
Trade in Textiles*,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1981.
- Exporters of Textiles and Clothing, "Back  
Up" Study on Textiles, 1983.
- GATT, *Textiles and Clothing in the World  
Economy*, 1984.
- Hamilton, Carl, "Voluntary Export Restraints, Trade Diversion and Retaliati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Seminar Paper No. 253, University of Stockholm.
- Jenkins, Glenn P., "Costs and Consequences of the New Protectionism, The case of Canada's Clothing Sector", The North-South Institute, 1980. 6.
- Keesing, Donald B. and Wolf, Martin., *Textile Quotas against Developing Countries*,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Thames Essay No. 23, 1980.
- Wolf, Martin and Hans Hinrich Glismann, Jeseph Pelzman, Dean Spinanger, *Costs of Protecting Jobs in Textiles and Clothing*,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Thames Essay No. 37, 1984.